

「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·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
관한 조례」 제정에 관한 청원

심 사 보 고 서

청원 번호	11
----------	----

2019년 11월 27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10월 30일, 이장희 외 180명
- 나. 소개의원 : 권수정 의원
- 다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31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9년 11월 27일 상정, 채택)

2. 청원의 요지

가. 청원이유

-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, 환경사고 등으로부터 서울시민의 보건 안전은 물론 자연환경을 지키고 주한미군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요청함.

나. 주요내용

-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및 환경사고를 예방하고, 신속하게 사후 조치하기 위한 조례 제정 요청 건

다. 청원소개의견 요지(소개의원: 권수정 의원)

-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, 환경사고 등으로부터 서울시민의 보건 안전은 물론 자연환경을 지키고 주한미군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것임.

3. 검토보고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■ 개요

- 본 청원은 반환예정인 용산미군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고에 대한 서울시와 주한미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, 사고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,
- 반환된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조성예정인 용산공원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평화·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의 제정을 요청하는 사안임.

■ 서울시내 미군기지 오염 실태

- 현재 서울시내 미군기지는 총 12개소이며 반환된 것이 3개소이고 미반환된 곳이 9개소로 이 중 오염이 확인된 곳은 유엔사(용산), 캠프그레이(동작), 사우스포스트(용산 녹사평역 인근), 캠프킴(용산) 등 4개소(〈표 1〉 참조)임.

<표 2> 서울시내 미군기지 세부현황

기 지 명		위 치	면적(천㎡)	오염여부	비 고
계		12개소	2,985	오염 4개소	
용산 기지	① 메인포스트	용산기지 내	792	녹사평역 (지하수)오염	(반환예정)
	② 사우스포스트	용산기지 내	1,881		(반환예정)
용산 기지	③ 캠프 킴	용산기지 외부	48	(토양+지하수)오염	(반환예정)
	④ 유엔사	용산기지 외부	53	(토양)오염	반환기지
주변	⑤ 미8군 수송부	용산기지 외부	77		(반환예정)
	⑥ 501 정보대	용산기지 외부	5		(반환예정)

기 지 명		위 치	면적(천㎡)	오염여부	비 고
계		12개소	2,985	오염 4개소	
기타 산재 기지	⑦ 니블로베릭(공동주택)	한남동	28		
	⑧ 캠프 모스(통신)	남산타워 옆	30		
	⑨ 8군 휴양소	남산(한남동)	19		(반환예정)
	⑩ 캠프 그레이	동작구 대방동	9	(토양+지하수)오염	반환기지
	⑪ 극동공병단	중구 방산동	42		(반환예정)
	⑫ 서울역 미군사무소	서울역	1		반환기지

- 오염된 미군기지 현황을 살펴보면, 대부분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었으며 반환기지의 경우 국방부가 정화를 완료하였으나, 미반환기지의 경우 2003.10월 한·미합동회의에서 미군기지 내부는 미군이, 기지주변은 서울시가 복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오염정화를 실시한 후 서울시는 국가에 배상 청구¹⁾를 하고 있는 실정임.

<표 3> 오염 미군기지 세부현황

구 분	미 반환기지		반환기지	
	사우스포스트	캠프킴	캠프그레이	유엔사
위 치	녹사평역 주변 (용산 이태원 34-2일대)	삼각지역 주변 (용산 한강로 1-1일대)	동작 대방동 340-4	용산 동빙고동 310-6
오염분류	지하수	토양 및 지하수	토양 및 지하수	토양
오염확인	지하수오염 발견 (’01.1.)	기름유출 발견 (’06.7.)	환경오염조사 (’05.11.~’07.09.)	환경오염조사 (’05.08.~’07.09.)
추진실적	주변지역 정화중 (’02~’18년)	주변지역 정화중 (’08~’18년)	국방부 정화완료 (’07.09.~’11.10.)	국방부 정화완료 (’07.09.~’13.9.)
정화비용	53.7억 (2018년 말 기준)	19.2억 (2018년 말 기준)	15억 (국방부 예산)	14억 (국방부 예산)

- 미군기지 주변 토양오염실태조사(2014년~2017년) 결과 총 10개

1) □ 서울시 정화용역비 환수소송 관련

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(〈표 3〉 참조)하는 것으로 나타났고,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에 따라 2017.11.29 일 환경부가 공개한 기지 내·외부 지하수오염 조사결과를 보면 벤젠이 최대 671배까지 기준을 초과한 것²⁾으로 나타났음.

<표 4> 미군기지 주변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

구분	조사내역			초과지역 (지목)	초과 항목	초과 농도	토양오염 우려기준
	지역	지점수	시료수				
2014년	소계	9	45	1			
	녹사평역 주변	8	30	0			
	캠프킴 주변	1	15	1(도로)	TPH	10,064	2,000
2015년	소계	13	48	3			
	녹사평역 주변	12	33	1(도로)	TPH	2,511	
	캠프킴 주변	1	15	2(도로)	TPH TPH	6,634 5,995	2,000

○ 근거법령

- 「주한미군민사법」 제2조(국가의 배상책임)

※ 주한미군민사법 : 「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」

- 「국가배상법」

○ 판결요지

-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, 고용원 또는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「국가배상법」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

- 합중국 군대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·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적용한다.

- 피고(대한민국)은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원고(서울시장)이 유류오염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

○ 정화비용은 매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전액 환수 조치

- 환수실적 : 약 88억원('01.~'17년 정화비 67억, 지연손해금 21억)

- 추후 미측에 배상청구 근거확보를 위해 환수소송 지속 수행

2) ▶ 기지 내부 : 25개 관정 중 17개소 기준초과/벤젠 최대 671배(10.077/0.015)

▶ 기지 외부 : 34개 관정 중 14개소 기준초과/벤젠 최대 470배(7.051/0.015)

구분	조사내역			초과지역 (지목)	초과 항목	초과 농도	토양오염 우려기준
	지역	지점수	시료수				
2016년	소계	12	117	5			
	녹사평역 주변	15	69	2(도로)	TPH	3,110	2,000
					TPH	2,209	
	캠프킴 주변	1	48	3(도로)	TPH	2,126	2,000
					크실렌	72	15
					TPH	5,097	2,000
2017년	소계	42	209	1			
	수송부 주변	8	47				
	8군휴양소 주변	2	4				
	니블로베럭 주변	2	9				
	메인포스트 주변	22	111	1(대지)	TPH	1,285	800
	캠프모스 주변	2	4				
	정보대 주변	1	4				
	극동공병단 주변	5	30				

- 또한, 시민단체가 미국 정보자유법을 활용하여 1990~2015년까지 용산미군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오염사고 기록에 대한 공개요청에 따라 미 국방부 산하 태평양사령부가 공개(2017.4월)한 자료를 살펴보면, 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는 해당 기간 내에 총 84건으로 보고되었음(붙임 참조).

■ 청원에 대한 의견

- 서울 중심부에 있는 용산미군기지는 지리적, 역사적 가치가 있는 상징적인 시설로서 최근 기지 반환 협의 및 용산공원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,
- 기지 내·외부가 유류유출 등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, 온전한 기지 반환을 위해서 철저한 환경조사 및 오염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.

- 그러나 현재 한·미 주둔군 지위 협정³⁾(SOFA, Status of Forces Agreement) 제4조⁴⁾에 따라 미국정부는 미군기지 내부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며,
- 미군기지 내·외부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유, 조사 등과 관련하여 서도 한·미 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른 후속문서 “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(2002.1.18.)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으로 미군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하지 못하고 환경부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임.
- 그러나 서울시가 제한적인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청원에서 요청한 바와 같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주한미군기지 내·외부 환경오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, 주한미군 측에 보다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음.

3) 한·미 주둔군 지위 협정(SOFA, Status of Forces Agreement)

- 체결 : 1966. 7월
- 정식명칭 :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
 - ※ 약칭 : ‘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’ 또는 ‘한·미 SOFA’(Status of Force Agreement)
- 효력 : 본문 및 후속문서(4개) 모두 법률적 효력 있음
 - ※ 합의의사록은 국회 비준, 특별양해각서는 대통령의 재가
- 조문구성 : 본문 및 4개의 후속문서
 - ① 합의의사록
 - ② 양해사항
 - ③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
 - ④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
 - ※ 합의의사록과 특별양해각서에 환경관련 조항 명시

4) 제4조 시설과 구역-시설의 반환(Facilities and Areas - Return of Facilities)

1. 합중국 정부는,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,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, 또한 이러한 원상 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.

■ 조례안 제정 요구에 대한 의견

- 청원으로 요청된 조례안을 살펴보면, 현재 반환예정인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를 위해 서울시장이 적극 노력하고, 기지 반환 후 평화·생태공원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,
- 서울 관내에는 용산미군기지를 포함하여 9개소의 미반환 미군기지가 있는 상황((표 1) 참조)이므로, 용산미군기지만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울 관내 주한미군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.
- 물순환안전국 역시 서울 관내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시민들의 보건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나,
- 용산미군기지 평화·생태공원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 및 시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임.
- 참고로, 주한미군기지 내·외부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경기도, 평택시, 부산광역시 남구, 대구광역시 남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「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」를 제정·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<표 6>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

자치단체	조례명	제정일자
경기도	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	'16.08.03.
평택시	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	'16.11.14.
부산광역시 남구	부산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	'17.02.10.
대구광역시 남구	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	'19.10.10.

[붙임] 1990년~2015년 미군기지 유류유출 사고 내역(84건)

[붙임] 1990년~2015년 미군기지 유류유출 사고 내역(84건)

연번	일시	지역	빌딩번호	유출량 (Gal)	유출량 (L)	유종	비고
1	1991-09-19	수송단 (TMP)	5709	50	189	디젤	
2	1992-06-05	수송단 (TMP)	5729	200	756	휘발유	
3	1992-12-02	용산	5402	30	113	코팅시너	
4	1993-01-26	용산	501st 모터풀	10	37	디젤	
5	1993-12-28	수송단 (TMP)	5709	177	669	디젤	
6	1995-03-21	용산	7051 (UST 600)	Unknown		디젤	-오염토양 100m ² 굴착 새토양 140m ³ 매립
7	1995-03-24	극동공병단 (FED)	62	700	2,646	디젤	-세부 내용 없음
8	1995-04-21	용산	1669	Unknown		디젤	
9	1995-09-26	극동공병단 (FED)	55	<1,000		디젤	-세부 내용 없음
10	1997-10-02	용산	5102	7,620	28,803	디젤	-8월12일 발견 여러 차례 유출된 것으로 추정 -환경부 통보
11	1997-12-09	용산	4506/4552	1,500	5,670	디젤	-유출시점 알 수 없음
12	1998-04-09	용산	5531	5	19	디젤	-용산구, 환경부 통보
13	1998-05-09	용산	4474 (UST 600)	<100		디젤	
14	1998-06-15	용산	4041	500	1,890	디젤	
15	1998-07-02	용산	4194	300	1,134	디젤	-용산구, 환경부 통보 -한달 전 보고되지 않은 110갤런 이하 사고 발생
16	1998-07-06	캠프코이너	1127	150	567	디젤	-배수로와 지하로 스며들
17	1998-12-01	용산	4723 (UST3-10,000)	2,000	7,560	휘발유	-도급업체 조사결과 휘발유가 지표면 아래 6피트정도 젖어있어 제거
18	1998-12-04	용산	4723 (AST)	150	567	디젤	-98.10.25.부터 유출된 것으로 추정
19	1999-02-04	캠프 킴	1232	60	227	디젤	
20	1999-06-01	용산	7093	6	23	디젤	

연번	일시	지역	빌딩번호	유출량 (Gal)	유출량 (L)	유종	비고
21	1999-07-14	용산	4110	50	189	디젤	
22	1999-08-06	용산	4544	Unknown		디젤	
23	1999-10-18	용산	1327 (AST1330-1,000)	391	1,478	디젤	
24	1999-11-05	용산	4751	100	378	디젤	-여름부터 유출된 것으로 추정, 11월 건물 4758에서 발견. 원인은 건물 4713, 4751 -토양50m³ 매립 필요
25	2000-01-10	용산	7125 (UST 600)	1,717	6,490	JP-8	
26	2000-03-28	용산	4275	284	1,074	JP-8	
27	2000-08-29	캠프코이너	1050	Unknown		디젤	
28	2000-08-31	캠프코이너	1189	50	189	JP-8	
29	2001-07-24	용산	5498 (AST 600)	150	567	JP-8	-세부 내용 없음
30	2001-10-11	용산	5495	Unknown		디젤	
31	2001-11-02	용산	7003	1,250	4,725	JP-8	-세부 내용 없음
32	2002-01-24	용산	7038 (UST 600)	300	1,134	JP-8	
33	2002-03-14	용산	3793(AST 1,000)	200	756	JP-8	
34	2002-03-27	용산	7026(UST 600)	228	862	JP-8	
35	2002-05-01	캠프코이너	1042(AST 1,000)	3,500	13,230	JP-8	-용산 인근 배수로, 서울시 하수체계로 합수됨
36	2002-05-06	용산	2700	200	756	JP-8	
37	2002-05-14	캠프코이너	1016(UST 7,500)	Unknown		JP-8	-SOFA 환경분과위/ 환경부통보 -세부 내용상 5,700갤런으로 추정함
38	2003-03-14	용산	1300	Unknown		Unknown	-서울시, 환경부 통보
39	2003-07-07	용산	4216(AST 2,500)	400	1,512	JP-8	-서울시, 환경부 통보
40	2003-09-22	용산	1488(UST 1,200)	900	3,402	JP-8	

연번	일시	지역	빌딩번호	유출량 (Gal)	유출량 (L)	유종	비고
41	2004-03-24	용산	4156	Unknown		JP-8	
42	2004-08-04	캠프코이너	1044(AST 275)	200	756	JP-8	
43	2004-10-12	용산	7044(AST 2,500)	618	2,336	JP-8	
44	2004-12-06	캠프코이너	1130(AST 600)	Unknown		JP-8	
45	2004-12-07	용산	7073(AST 300)	150	567	JP-8	
46	2004-12-20	캠프 킴	12(AST 1,000)	500	1,890	JP-8	-세부 내용 없음
47	2005-03-22	용산	1409(UST 600)	90	340	JP-8	-환경부 통보
48	2005-05-26	용산	1619(AST #1669-2)	400	1,512	JP-8	-환경부,서울시,용산구에 5월14일 연료 유출에 대해 통보
49	2005-06-01	용산	Gate #8	3	11	휘발유	
50	2005-07-29	용산	1311	Unknown		JP-8or 휘발유	
51	2005-09-29	용산	2661/2658/2557	700	2,646	JP-8	
52	2007-03-07	용산	7045	900	3,402	디젤	
53	2007-10-30	용산	4713	600	2,268	디젤	
54	2008-07-01	용산	4878	40	151	디젤	
55	2009-05-11	용산	5735	<5		JP-8	
56	2010-02-02	용산	5460	105	397	디젤	
57	2010-06-14	용산	5495	<4 quarts		중고모터 오일	
58	2010-09-29	용산	1324	Unknown		휘발유, 디젤	
59	2010-10-05	게이트1번 (현재16번)	1344	Unknown		Unknown	-한국 언론 보도로 조사시작. 정화작업 실시 -연료유출 시점 판단불가, 총손실량 추정되지 않음
60	2010-10-29	용산	2608	0.6	2	엔진오일	
61	2010-12-24	용산	7090	Unknown		디젤	

연번	일시	지역	빌딩번호	유출량 (Gal)	유출량 (L)	유종	비고
62	2011-05-18	용산	Gate #52	About 3		엔진오일	
63	2011-11-30	용산	Gate #52	About 7		엔진오일	
64	2011-12-06	캠프코이너	AST 1095	About 7		디젤	
65	2013-02-20	용산	1358	Unknown		Unknown	
66	2013-04-29	용산	2212	15	57	가솔린	
67	2013-04-30	용산	1657 Area	< 5		유압유체	
68	2013-06-04	용산	1390 Area	Unknown		중유	
69	2013-06-28	용산	1416	< 3		디젤	
70	2013-09-17	용산	3740, 3744 Area	Unknown		디젤	
71	2014-03-14	용산	4329	<3		엔진오일	
72	2014-07-25	용산	2269	<3		작동유	
73	2014-08-26	용산	7068A	>10		디젤	
74	2014-09-23	용산	2320	100	378	디젤	
75	2014-11-26	용산	1509	<10		디젤	
76	2015-01-27	용산	4209	5	19	유압유체	
77	2015-01-28	용산	4275	Unknown		디젤	
78	2015-02-25	용산	4151	Unknown		디젤	
79	2015-03-31	용산	4723	5	19	디젤	
80	2015-04-28	용산	4817	20	76	디젤	
81	2015-05-21	용산	5380	50	189	디젤	
82	2015-08-26	용산	1417	30	113	디젤	
83	2015-09-04	용산	5701	20	76	솔벤트 (용매제)	
84	2015-12-07	용산	Gate #16	1	4	엔진오일	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8. 심사결과 : 채택(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)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11. 의견서 : 별첨

의견서

- **청원명 :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
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**
- **처리하여야 할 기관 : 서울특별시의회, 서울특별시장(물순환
안전국)**
- **처리결과 :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.**
- **채택의견 :**
 - 본 청원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, 환경사고 등으로부터 서울시민의 보건안전은 물론 자연환경을 지키고 주한미군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으로,
 -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주한미군기지 내·외부 환경오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, 주한미군 측에 보다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큰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.

청 원 요 지 서

접수번호	11	접수연월일	2019. 10. 30
청 원 인	주 소	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62	
	성 명	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/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이장희 외 180명	
소개의원	권수정	소속위원회	기획경제
건 명	「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·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제정에 관한 청원		
소관위원회	도시안전건설		
<p>○ 용산에 65년 이상 주둔하였던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.</p> <p>반환협상이 마무리되면 용산 미군기지는 ‘용산공원’ 이란 이름으로 서울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바, 군사기지에서 평화·생태공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과 폐기물 등 부지의 환경오염을 치유하고, 녹지공간으로 복원하는 방안에 관한 서울시의 역할이 필요함.</p> <p>이에,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참여를 통한 평화·생태공원 조성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함.</p>			